

2023

하도급법 가이드라인

(공정거래자율준수 부문별 편람)



[도입 배경 · 목적]

하도급법은 공정거래법의 특별법으로서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원사업자(주로 대기업)의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경제적 약자인 수급사업자(주로 중소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특히 하도급법은 공정 거래 관련 법 중에서도 당사와 같은 건설사에 가장 이슈가 많은 법이며, 협력업체와 거래하는 본사 및 대다수의 현장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에도 하도급(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등 공시, 공공공사 하도급 입찰결과 공개 등 중소기업 보호를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도급법을 개정하여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인해 회사는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와 같은 행정적 제재는 물론 민사상 손해 배상의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 벌점 부과를 통한 공공 입찰제한, 영업정지 등 심각한 경영상 리스크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하도급법에 대한 이해와 사전 검토 등을 통하여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컴플라이언스팀에서는 「하도급법 가이드라인」을 제작함으로써 임직원 분들이 업무 수행 중에 법 위반 행위로 문제되는 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임직원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쉽게 풀어서 요약 · 설명 드리는 자료입니다. 해당 내용을 자세히 다루고 있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업무 편람」과 함께 숙지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작성 및 개정]

본 문서의 작성 및 개정은 컴플라이언스팀의 심의를 거쳐 정하며, 컴플라이언스팀은 이와 관련하여 회사 임직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본 문서의 작성 및 개정 이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23. 11. 21. 최초 작성

Contents

하도급법 가이드라인

Part 01	하도급법 개요	
	1. 1 하도급법의 입법 취지·개요	3
	1. 2 하도급법 적용 대상	3
Part 02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영향	
	2. 1 벌점 부과	5
	2. 2 위반 시 제재	5
Part 03	하도급법 원사업자 규율 내용	
	3. 1 서면 발급 및 보존 의무	6
	3. 2 선급금 지급 의무	7
	3. 3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8
	3. 4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9
	3. 5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	10
	3. 6 공급원가 등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 의무	11
	3. 7 부당특약 금지	12
	3. 8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13
	3. 9 부당감액 금지	14
	3.10 부당한 위탁 취소 금지	15
	3.11 기술자료 제공요구 및 유용행위 금지	16
	3.12 하도급(납품)대금 연동제	17
	3.13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등 공시	18
	3.14 공공건설하도급 입찰 결과 공개	18
Part 04	하도급법 유의사항	
	4. 1 체크리스트	19

Part 01 하도급법 개요

1.1 하도급법의 입법 취지 - 개요

입법 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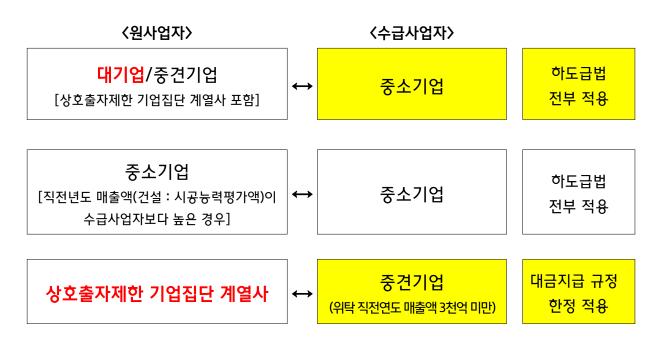
-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 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 특성

- 하도급법은 강행법규이므로 당사자간 합의로 법 적용을 배제하지 못함
- 건설산업기본법보다 우선 적용되며,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보다 우선 적용 (법제28조, 제34조)
- 발주자가 해외사업자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국내 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하도급법 적용

Part 01 하도급법 개요

1.2 하도급법 적용 대상 (하도급법제2조)



Part 01 하도급법 개요

1.2 하도급법 적용 대상

설계용역 등

■ 건설업자가 그 업(業)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 - 시공 자격 없는 건설업자 / 무등록 및 무면허 / 시공참여자(노무자 및 장비 건설위탁 대여자 등) 개인에게 위탁한 경우는 건설위탁에 해당되지 않음 - 건산법 上 불법 하도급, 불법 재하도급의 경우? ⇒ 건설업 등록을 한 건설업자간의 하도급(재하도급 포함)이고, 하도급법 제2조 에 의한 당사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하도급법 적용 〇 ■ 물품의 제조(가공포함) · 수리 · 판매 · 건설업자가 그 업(業)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 제조위탁 - 단순 건설자재인 시멘트, 자갈, 모래 → 제외 - 규격 및 품질 등을 지정한 골재/석산 등 제공하여 임가공 위탁 → 제조위탁 해당 ■ 자재, 부품 또는 시설물로서 규격 또는 성능을 지정한 도면, 설계도, 시방서 등에 따라 주문 제작 ex) 가드레일, 표지판, 밸브, 갑문, 엘리베이터 등 건설업 ■ 거래 관행상 별도의 시방서 등의 첨부 없이 규격 또는 품질 등을 지정하여 주문 제조위탁 ex) 레미콘(서울, 경기, 인천, 울산, 부산 제외), 아스콘 등 ■ 부속시설물로서 규격 등을 지정한 도면, 시방서 및 사양서 등에 의하여 주문 ex) 신발장, 거실장, 창틀 등 ■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의 공급을 업(業)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業)에 따른 용역수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용역위탁

ex) 정보프로그램(SW), 영화·방송프로그램, 문자·도형성과물, 엔지니어링,

Part 02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영향

2.1 벌점 부과

√ 개념

-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자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일정 기준 초과시 관계 행정기관 장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 영업정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함 (하도급법 제26조)

√ 부과기준

		과징금		고 발	
경 고	시정명령	일 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감액 기술탈취 보복행위	일 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감액 기술탈취 보복행위
0.5	2.0	2.5	2.6	3.0	5.1

^{※ &#}x27;23.10.4 신설: 지위남용, 거짓, 부정한 방법 등으로 미연동 합의 (5.1) 하거나 연동제 적용 회피(3.1)

√ 벌점에 따른 영향

구 분	영 향
3년간 3회 경고이상 처분 + 누산벌점 4점 초과	· 상습 법 위반 사업자 지정(PQ신인도 -7점)
3년간 누산벌점 5점 초과	·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3년간 누산벌점 10점 초과	· 영업정지 요청

2.2 위반 시 제재

시정명령	■ 대금지급, 법 위반행위 중지, 재발방지, 시정조치 사실 공표명령 등
과징금	■ 하도급대금의 2배 이내 (중대성과 파급효과를 기준으로 결정)
손해배상	■ 아래 행위는 하도급대금의 3배까지 손해배상책임 가능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감액, 부당한 위탁 취소, 부당 반품 금지, 기술탈취, 보복조치
벌 금	■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3.1 서면 발급 및 보존 의무 (제3조)

규율내용	■ 법정사항을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서면을 사전에 (공사/제조 착수 등 계약내용 수행 이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 ※ 전자서명/전자서면 포함	
필수 기재사항	① 위탁일 / 목적물 등의 내용 ② 제공하는 시기 / 장소 ③ 검사의 방법 및 시기 ④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 지급기일 ⑤ 원재료 제공 시, 품명·수량·제공일·대가 및 대가 지급방법 / 지급기일 ⑥ 원재료 가격변동시 대금 조정 요건 및 방법	
추가공사	■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작업으로 인한 물량변동? → 시공완료 후 즉시 정산합의서로 대체 가능 · 추가계약서 · 작업지시서 사전 발급 필수	
감액서면 교부의무	■ 정당한 감액의 경우라도, 법 제11조 3항에 따라 감액서면 사전 교부 丛 - 법정기재사항 (시행령 제7조의2(하도급대금 감액 시 서면 기재사항)) ① 감액사유·기준 / ② 감액되는 물량 / ③ 감액금액 / ④ 감액방법 ⑤ 감액의 정당성 입증사항 등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 서면이 교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급사업자가 위탁내용 확인 요청 時 - <u>15일 이내</u> 에 원사업자가 <u>인정 or 부인의 의사</u> 를 <u>서면으로 회신</u> 할 의무 발생 - 15일 경과 시, 수급사업자 <u>통지 내용대로 위탁 추정</u> 됨	
서류 보존기간	■ <mark>거래종료일 (</mark> 공사완료일 or 타절일)로부터 <mark>3년</mark> (= 공정위 사건 조사 기한)	

사 례

에스케이오션플랜트는 2018년 4월말 수급사업자 A사에 위탁한 선박블록 조립작업에 대해 물량 및 단가를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변경계약 서면 미발급 하였고, 2018년 6월부터 2019년 2월 기간 중 A사에 위탁한 해양플랜트 구조물공사에 대해 추가로 작업물량을 위탁했으나 이에 대한 추가계약에 대한 서면미발급 하였음.

제 재

시정명령 ('23.4.20)

3.2 선급금 지급 의무 (제6조)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 발은 내용과 비율1 에 따라 받은 날 (제조 등의 위탁 전에 받은 경우에는 위탁한 날)로부터 15일 이내2에 지급

발주자가 선급금 용도를 지정하는 경우, 그 용도에 한정하여 하도급 선급금 지급

알주자가 토공사 사용 용도 지정하여 선급금 지급 時 ?

한 공종에 선급금 지급 의무 없음

원사업자

선급금 지급

선급 지급

선급 사업자

선급 보증서 제출

사 례

〈계약규정을 근거로 선급금 미지급〉

계산방법

주의사항

㈜케이에이치는 '3차 화학용품 및 암모니아열교환기 제관 제작'및 '유지씨씨(Ugcc)에 틸렌 저장용기 제관 제작'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하면서,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하였음에도 A사에 지급해야 할 선급금 3억1,150만원을 '선급금 없음'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유로 법정지급기일인 15일 내에 지급하지 않음.

'선급금 보증서 제출 요청일 ~ 보증서 제출일' 기간 계산에서 <mark>제외</mark>

탈법행위 금지: 선급금 포기각서 제출 강요 후 선급금 미지급 행위

☞ 원사업자가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하도급 대금을 기성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선급금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하도급법에 따라 원사업자는 발주자로 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그 내용과 비율대로 반드시 지급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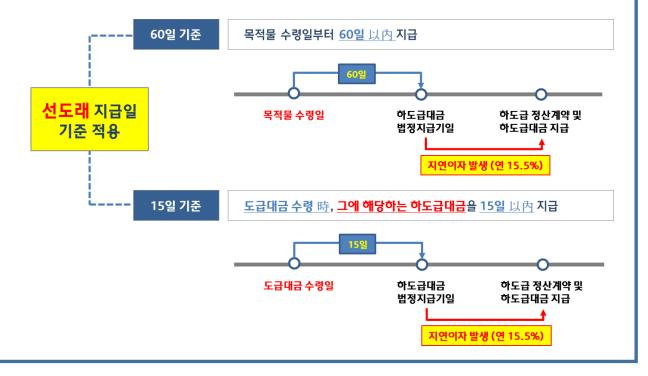
제 재

시정명령 / 교육 이수 명령 / 선급금 이자 지급 명령

3.3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제13조)

√ 규율내용

- 하도급대금은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u>도급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u>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사 례

㈜레즐러가 2020.09.09.과 2021.05.17.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 중 전기공사 2건을 수급사업자에게 시공위탁한 후, 수급사업자가 각각 2021.01.06.과 2021.08.19.에 전기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또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미지급

제 재 시정명령 ('23.5.11)

3.4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제13조의2)

개 요	■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u>30일 이내</u> 에 수급사업자에게 <u>공사대금 지급을 보증</u>
보중금액	1. 공사기간 4개월 이하: 하도급계약금액 - 선급금 2. 공사기간 4개월 초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 2개월 이내
주의점	■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는 <u>수급사업자와의 합의로 면제 불가</u>

※ 신용등급 높은 회사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기준 폐지 ('20.7.8) : 당사 보증의무 발생

※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14. 다.

사 례

두산건설은 2020.4.3.부터 2022.4.7.까지 22건의 하자보수공사를 위탁하기 위해 17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않음**

제 재 시정명령 ('23.9.11)

3.5 설계변경 등 하도급대금 조정 및 통지의무 (제16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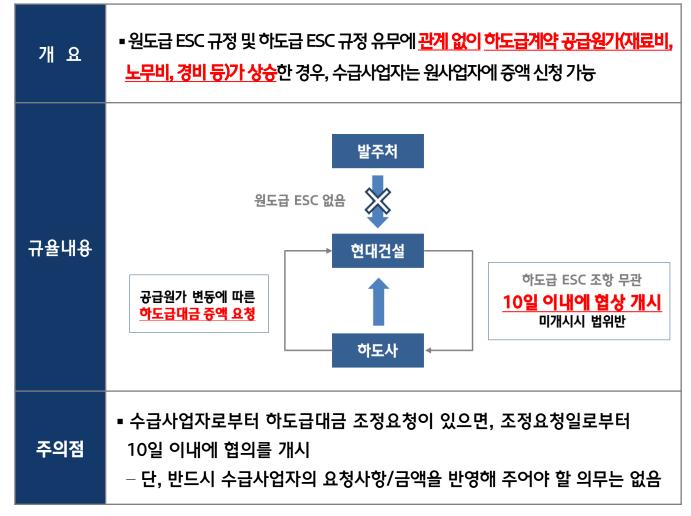
■ 건설위탁 등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개 요 이유로 도급계약이 중액(감액)된 경우, 변동된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 대금 증액(감액) 30일 이내 15일 이내 규율내용 원도급 변경계약일 원도급 변경계약 내용 원도급 변경계약의 수급사업자에게 내용/비율에 따라 「서면 통보」 「하도급 변경계약 체결」 ■ 설계변경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추가 금액의 <mark>내용과</mark> 비율이 명확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 조정기준 ■ 내용이 불명확한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평균비율에 따라 지급 하여야 함

사 례

㈜테크윈은 2021. 9. 3. 및 2022. 3. 31.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ESC) 및 설계변경을 이유로 도급계약금액을 중액 받았음에도 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중액 받은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지 않았고, 중액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중액조 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제 재 시정명령 ('23.8.31)

3.6 공급원가 등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 의무(제16조의2)



※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목적물 등이 납품등 시기가 지연되어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 되는 경우'를 조정 신청 사유에 추가 ('20.5.27 시행)

√ 위반 예시

-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의 조정협의 신청에 대해 응답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개시 하겠다고 통보한 후 회의 개최, 의견 교환, 단가조정안 제시 등 <u>실질적인 협의 절차</u> 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시장조사, 원가 산정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상대방이 수용할 수 없는 가격을 되풀이하여 제시하는 경우

3.7 부당특약 금지 (제3조의4)

개 요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됨

규율내용

- 원사업자가 제3조제1항의 <u>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u>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u>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u>을 수급 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원사업자가 <u>입찰내역에 없는 사항</u>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 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u>이익을 제한</u>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사 례

- 1. 경남기업(주)는 민원 처리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특약*, 입찰 내역에 없는 사항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특약** 등 7개 유형, 10건의 부당특약 설정
 - * "발생되는 공사 민원은 업체에서 전적으로 책임진다."
 - ** "을은 내역서 등에 없는 사항이라도 갑의 지시에 따라 공사비 증감없이 시공해야 한다."
- 2. 태평로건설(주)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특약*,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 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특약** 등 부당특약을 설정
 - * "원도급사는 기성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 ** "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 및 제 경비는 수급사업자가 부담 처리한다."

제 재

시정명령 ('22.3.10)

3.8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제4조)

개 요

■ <u>부당하게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u>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 또는 하도급을 받도록 강요 금지

- 정당한 이유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협조요청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당해 금액을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시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게 대금 결정하는 행위
-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 계약 체결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금액 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역부는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원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 또는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경우인지 역부 등 최저가 입찰금액 보다 낮게 결정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에 해당 되는지 역부로 판단하며 원사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함

사 례

규율내용

㈜동일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경쟁 입찰로 53개 수급사업자에 게 84건의 건설 공사를 위탁하면서, 최저가 입찰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지 않고 <u>추가 협상을 통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u>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

제 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 ('19.12.6)

3.9 부당 감액 금지 (제11조)

개 요

■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규율내용

-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이 <u>발주 시에 결정한 하도급대금을 발주 후에 감액 하는 것</u> 으로 감액의 명목과 방법, 금액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일체의 감액 행위 금지
- 즉, 수급사업자에게 책임 없이 발주시에 정해진 금액(발주시에 즉시 교부하였던 서면에 기재된 금액)으로부터 일정액을 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전면적으로 금지
- ※ 감액의 정당성 판단기준 (심사지침)
- 하도급 계약 체결 및 감액의 경위, 계약이행 내용, 목적물의 특성과 그 시장상황, 감액된 하도급대금의 정도, 감액 방법과 수단, 수급사업자의 귀책 사유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주의점

- 감액이 정당한 경우라도, 감액 시 서면 발급 必
- ※ 서면 기재사항: 감액사유와 기준, 감액대상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감액금액, 공제 등 감액방법, 기타 감액의 정당성 입증사항 등

사 례

(주)포스텍은 2012년 4월 경 부산 소재 사업장에서 발주자의 단가 인하 요구, 제조원가 상승 등을 이유로 선박블록을 제조하는 A사를 포함한 5개 수급 사업자에게 10%씩 동일한 비율로 단가를 인하했음. 이와 관련된 5개 수급 사업자가 그 작업의 내용, 거래 규모, 기존 작업 단가 등에서 차이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한 비율을 적용하여 하도급 단가를 인하했음. 또한 2011년 1월경 발주자로부터 단가 조정 요청을 받자, B사를 포함한 9개 수급 사업자에게 이미 작업을 완료하여 지급한 하도급 대금을 감액했음.

제 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

3.10 부당한 위탁 취소 금지 (제8조)

개 요 ■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① 발주의 임의 취소, 변경 및 ② 목적물수령・인수 거부 또는 지연 금지 ■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정상적으로 시공하고 있는데도 시공 능력부실 등의 객관적 입증자료 없는 막연한 이유로 공사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행위 1) 선행공종이 지연되어 수급사업자가 시공해야 할 후속 공종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경우 2) 무리하게 공기를 일방적으로 단축한 후 공기지연을 이유로 해지하는 경우 1.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유무 2. 위탁취소 사유가 계약서에 규정, 위탁취소의 계약 내용 및 절차 준수 역부 3. 위탁취소와 관련한 충분한 협의가 있었는지 역부 (합의의 진정성)

4. 수급사업자의 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였는지 여부

사 례

진성이엔지는 2012.1월부터 2013.6월까지 수급사업자 영진테크에게 자동차 부품을 제조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생산성이 낮은 자신의 생산라인 운영 요청에 대하여 수급사업자가 이를 거절하자 임의로 위탁을 취소

제 재 시정명령

3.11 기술자료 제공요구 및 유용행위 금지 (제12조의3)

기술자료 요구금지

- 협력사의 **기술자료 요구 금지** (단,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가능)
- ※ 정당성: 제조 등 위탁목적 달성 위해 절차적/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예) 공동특허 개발, 공동기술개발 약정, 대금 인상폭 결정, 제품 하자 원인규명 등

서면발급 · 비밀유지계약 의무

- 협력사와 <u>미리 협의</u>하여 최소한 범위 내 기술자료만 대상으로 <u>적법한</u> 형식 서면 교부 통해 요구
- ※ 기재사항: 기술자료 제공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및 지급방법,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 협력사와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u>비밀유지계약 체결</u>*'22.2월 시행
- ※ 기재사항: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사용기간, 기술자료 보유할 임직원 명단, 비밀유지의무, 기술 자료의 목적 외 사용금지, 비밀유지 · 목적외 사용금지 위반에 따른 배상, 기술자료 반환 · 폐기 방법 및 일자

기술유용 · 제3자 제공 금지

- 취득한 기술자료를 <u>자기(회사)를 위해 사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 금지</u>
 - * 취득 목적 및 합의된 사용범위를 초과하여 불공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충분한 협의 또는 정당한 절차 要)



사 례

현대중공업은 굴삭기 부품인 하네스 구매가격을 낮출 목적으로 납품업체를 다원화 또는 변경하는 시도하는 과정에서 기존 납품업체의 도면을 다른 하네스 제조업체에게 전달하여 납품가능성을 타진하고 납품 견적을 내는데 사용하도록 함. 현대중공업은 자신이 도면을 전달한 제3의 업체에게 견적 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기존 공급처에게는 납품가격 인하를 요구한 결과, 공급처를 변경하는 대신 기존 공급처의 공급가를 최대 5%까지 인하함.

제 재

시정명령, 과징금 및 법인·임직원 고발 ('19.5.29)

3.12 하도급(납품)대금 연동제 (제3조②항 외) *'23.10.4 시행

개 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여야 함 ※ 하도급법 외 상생협력법도 적용되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과 수탁 · 위탁 거래 건 모두 적용
	■ "주요 원재료"란 하도급거래(수탁 · 위탁거래)에서 목적물 등의 제조 · 수리 · 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u>하도급대금(납품대금)</u> 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함 (10% 이상인지는 <u>각 원자재 별로 계산</u> 되며 사용되는 원자재를 합하여 계산되지는 않음)
	■ 다만, 소액(1억원 이하) 계약, 단기(90일 이내) 계약, 원수급사업자가 연동하 지
규율내용	않기로 합의하고 그 취지와 사유를 서면에 적시한 경우에는 하도급(납품)대급 연동을 하지 않을 수 있음
	■ 주요 원재료가 있는 모든 하도급거래(수 · 위탁거래)에 연동사항을 약정서 등에 기재할 의무가 있으며, 아래사항 원칙적으로 포함 ① 하도급대금(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인 물품 등의 명칭, ② 주요 원재료, ③ 조정요건, ④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⑤ 하도급대금 연동 산식, ⑥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⑦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
	■ 업체선정 시, 연동제 관련 협력사 협의 절차 반영 (입찰 단계 , 계약 단계)
주의사항	■ 연동조건에 대하여 협력업체와 성실히 협의, <mark>거래상 지위 남용 및 탈법행위</mark> 하지 않아야 함 (미연동 강요 벌점 5.1점)
	■ (입찰시) 연동조건 안내 및 (계약시) <mark>연동특별약정서</mark> or <u>미연동 합의서 작성</u> 필요
	■ 조정 주기별 연동 조건에 따른 중감 역부 확인
	→ 연동조건에 따른 당사 분담금 발생 시 예산 중액 및 변경계약 실시 → 감액 사유 발생 시, 당사-협력사 서명/날인 후 변경계약 실시

[※] 구체적인 내용은 구매사업부 게시('23.9) 『납품대금 연동제 업무 가이드』 참고 바랍니다.

3.13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등 공시 (제13조의3) *'23.1.12 시행

개 요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수단, 지급금액, 지급기간, 회사 내에 설치하는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여야 함
규율내용	 반기(상반기, 하반기) 중 지급된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 기간별 지급금액과 그 비중,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를 매 반기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45일이내에 공시 하도록 규정 (지급수단: 현금, 상생결제, 어음, 어음대체결제수단 등)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으로는 동 기구의 설치 여부, 담당 부서및 연락처, 분쟁조정 신청 절차·방법과 소요 기간을 공시
위반 시 제재	■ 시정조치,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미공시 : 500만 원, 주요 내용 누락 및 거짓 공시 : 공시기한 준수 200만원/ 공시기한 도과 250만원)

3.14 공공건설하도급 입찰 결과 공개 (제3조의5) *'23.1.12 시행

개 요	■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를 수주한 원사업자는 그 공사와 관련된 하도급거래 경쟁입찰 시 입찰금액, 낙찰자 및 낙찰금액, 유찰 사유를 고지하여야 함
규율내용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 등 종합심사제가 적용되는 공공공사의 하도급거래 경쟁입찰 시 입찰금액, 낙찰자 및 낙찰금액, 유찰사유 고지 개찰 후 지체 없이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자에게 고지
위반 시 제재	■ 시정조치,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미고지 또는 거짓 고지 :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이상)

Part 04 하도급법 유의사항

4.1 체크리스트 (1)

항 목	구분(법조항)	점검사항
입찰	하도급법 제4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 실행예산 초과 또는 저가심의 이외의 재입찰금지 규정을 준수하였는가? ■ 재입찰 진행시 재입찰 사유(실행예산 초과 또는 저가심의)를 협력사에게 명시적으로 안내하고 규정을 준수하여 진행하였는가? ■ 수급사업자 선정 시 경쟁입찰을 실시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가격협상을 하여 최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가? ■ 추가 · 변경공사 단가 산정 관련 현장여건 및 협력사와 상호 협의없이 당사의 타현장 단가 적용 등 일방적으로 대금을 결정하지 않도록 관리하였는가?
발주 및 계약	하도급법 제3조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 서면발급 시 법정 필수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였는가? ■ 계약일자가 실제 작업시작(착공)일 이전인가? ■ 법정기재사항 누락 시 해당 상황 및 사유를 명시하고 작업진행 중 혹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완전한 작업지시서 발급 및 변경계약을 진행하였는가? ■ 추가 · 변경공사 작업 착수 전 당사 작업지시서 표준 양식을 사용하여 작업 지시서를 발급하였는가?
특약 검토	하도급법 제3조의4 (부당한 특약의 금지)	 ■ 현장설명서의 해당조건이 하도급계약 서면에 내역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 협력사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사항이 있는가? ■ 해당 조건이 관련 법령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당사의 부담/의무사항으로 되어있음에도 협력사에게 전가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가? ■ 해당 조건이 당사(발주자 포함)의 설계변경, 지시 또는 협력사의 귀책 없는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 업무에 대해 협력사에게 책임 지우는 사항이 있는가? ■ 해당 조건이 해당 하도급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간접비의 인정 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사항이 있는가?
발주 취소	하도급법 제8조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하도급계약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였는가? ● 무리하게 공기를 단축한 후 공기지연을 이유로 하도급계약을 해지하였는가? ● 발주 취소가 발생된 경우, 협력사의 투입된 비용에 대해 정산이 이루어졌는가? ● 현장설명서에 당사의 귀책없이 발주자의 설계변경 등으로 발주물량이 줄어들수 있음을 명기하고 사전 안내하였는가?

Part 04 하도급법 유의사항

4.1 체크리스트 (2)

항 목	구분(법조항)	점검사항
감액 금지	하도급법 제11조 (감액 금지)	 ■ 당초 계약내용과 다르게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단가인하 하였는가? ■ 일방적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여 대금을 감액하였는가? ■ 물량축소에 따라 하도급대금이 감액되는 경우 감액사유와 기준 등을 정한 서면을 협력사에게 교부하였는가? ■ 당초 계약과 달리 무리하게 납기/공기 단축 후, 이 기간 내 납품하지 못한 이유로 일방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였는가?
대금 지급	하도급법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받은 날부터 15일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지급하는가? ■ 목적물 수령 후 법정지급기한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며, 기간 도과 시법정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있는가? ■ 발주자로부터 현금으로 도급 대금을 지급받는 현장의 경우 협력사에게 현금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있는가? 이 경우, 건설자재를 제조 및 용역 위탁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는가? ■ 하도급대금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해당 하도급 대금을 법정지급기한내에 공탁처리하고 있는가?
하도급대금 조정	하도급법 제16조2 (공급원가 변동 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조정)	■ 원자재가격 변동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였는가?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	하도급법 제12조의3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 협력사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가? 예) 공동특허 및 기술개발을 위한 경우,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의 승인 규모를 정하기 위한 경우, 제품의 하자 원인규명을 위한 직접적 기술에 해당하는 경우 등 ■ 당사가 협력사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려는 경우, 법정기재사항이 명기된 기술자료 요구서 발급 및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였는가? ■ 협력사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임의로 기술영업 등을 위해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당사의 요구에 의한 제공이 아니라는 확인서를 받았는가? ■ 협력사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후 목적을 벗어나 당사가 임의로 사용하거나 협력사의 경쟁회사 등 제3자에 제공하지 않도록 관리하였는가?



